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129호 2015. 12. 31(목)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 1218 호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1
- 남원시 조례 제 1219 호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남원시 조례 제 1220 호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남원시 조례 제 1221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남원시 조례 제 1222 호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2
- 남원시 조례 제 1223 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남원시 조례 제 1224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 남원시 조례 제 1225 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 남원시 조례 제 1226 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 남원시 조례 제 1227 호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 354 호 남원시 재정현안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104
- 남원시 훈령 제 355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일부개정규정..... 107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 2015 - 1569 호 2016년도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113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5 - 1566 호 도로공고..... 131
- 남원시 공고 제 2015-1572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132
- 남원시 공고 제 2015 - 1571 호 남원 관광지(북남원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공고..... 133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218 호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총괄 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감사실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협의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관 작성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의 보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및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 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시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시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은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설립허가 취소, 설립목적 달성 불능, 출자 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총괄 지도·감독하게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3. 출자·출연 기관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4. 출자 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가 보증한 사업
5.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8.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9.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및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시의원은 제외) 3명 이내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의 종류)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1. 정부·전라북도·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경영목표의 변경에 준하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28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경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6.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전년도 사업 운용 계획서
8.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9.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0.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④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⑦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전

라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분야 전문가

⑤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을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의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의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7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22조(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법·영 및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이 다르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 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 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219 호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 흥부제(이하 “흥부제”라 한다)”를 “남원시 흥부제”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흥부제”를 “남원시 흥부제(이하 “흥부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일자”를 “시기”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운영지원 등) ① 남원시장은 흥부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남원시 흥부제(이하 "흥부제"라 한다)</u>를 향토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郷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흥부제 제전일을 남원시민의 날로 정하여 문화예술 창달 및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축제로 적극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남원시 흥부제</u> ----- ----- ----- ----- ----- ----- ----- ----- ----- ----- -----</p>
<p>제2조(제전일) <u>흥부제</u>는 <u>중양절</u> (음력 9월 9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u>일자</u>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2조(제전일) <u>남원시 흥부제(이하 "흥부제"라 한다)</u> ----- . - ----- ----- <u>시기</u> ----- .</p>
<p><신 설></p> <p><u>제5조 (생략)</u></p>	<p><u>제5조(운영지원 등) ① 남원시장은 흥부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u></p> <p><u>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220 호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경비의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기관·단체·학습동아리 등의 평생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 (생략)

제7조(회의 등) ① (생략)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생략)

다.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출석으로 개의하
고 -----.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221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60,000	80,000	1. 1회 기준 : 3시간 - 다목적구장, 인공암벽장, 풋살장, 롤러경기장 별도 ※ 다목적구장 공휴일야간 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가산
	육상경기장	1회 3시간	15,000	20,000	25,000	30,000	
춘향골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100%가산
다목적구장		1면당 2시간 (조명료포함)	20,000	25,000	체육경기 외 대여 불가		3.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 측에서 이행 한다. - 장비 무료 대여
인공암벽장		전용사용료 (1일기준)	50,000	70,000			4.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1회 2시간 (체험등반 2회)	2,000	2,500			※ 인공암벽장은 별도운영 - 12월~3월 ·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문화체육센터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300,000		5.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 3기준)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 3기준)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30,000	40,000	40,000	50,000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3시간)					
풋살장		1회 2시간	어린이	청소년	일반		
			무료	무료	10,000		
롤러경기장	구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 3기준)
	트랙, 로드	월정회원 (주간)	10,000	15,000	20,000		
		월정회원 (야간)	15,000	20,000	25,000		

[별표 3]

체육시설 부대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기본료		※ 비 고	
춘향골체육관	조명	1회	실내조명	8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실내조명과 냉·난방은 실 사용료를 가산 적용 3. 무대조명,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무대조명	80,000		
	음향	1회	30,000			
	냉·난방	1회	40,000			
	전기	1회	20,000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1회3시간	120,000		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가산 2.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전기	1일1회	20,000			
	음향	1일1회	20,000			
다목적구장	전기	1일1회	20,000		1.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2.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음향	1일1회	20,000			
인공암벽장	전기	1일1회	20,000		1. 전기 1회 기준 1일	
문화체육센터	실내조명	1회	3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실내조명과 냉·난방은 실 사용료를 가산 적용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 가 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 가 산	
	조명 타워	축구	1회	40,000		
		족구	1회	15,000		
	냉·난방	1회	20,000			
	음향	1회	20,000			
	전기	1회	20,000			
롤러경기장	조명 타워	트랙	1회	30,000		
		로드	1회	15,000		
탁자		1개	1,000			
의자		1개	200			
샤워장		1인1회	200			
상·하수도사용료		1일1회	실제사용료			

※ 실내조명실사용료 = (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 설비용량×시간대별 전기요금×사용시간
 ※ 냉·난방 실사용료 = (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 축열시간×설비용량×사용시간별 전기요금×사용시간
 ※ 상하수도사용료 = (납원시 1인 1일 급수량 × 사용시간/24× 요금기본단가)×사용인원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사무실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휴대폰		
사 용 일 시					
행 사 명				인 원	명
사 용 시 설 명		사 용 시 간	~	사 용 료	
부 대 시 설 사 용 명		사 용 시 간	~	사 용 료	
총 사용료	금 원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222 호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노인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

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 공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20세 이상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

기 설치 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후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전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실비만을 징수한다.

1. 자동판매기의 경우 중간계량기를 설치
2. 중간계량기 설치비용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설 치 허 가 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설치종류 :

설치장소 :

허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남원시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허가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223 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소관에 속하는”을 “소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에 관하여”를 “지정에”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각하고자 할”를 “매각할”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담당국장과 민간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
강사 이상)
4. 공인중개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
이 있는 사람

제4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제9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⑪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제6호 중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을 “기준가격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을 “기준가격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대장가액 2천만원”을 “기준가격 3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제4호 중 “사용하고 있는지의”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을 “흩어져 있어”로, “집단화합으로써”를 “집단 화하여”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 중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회의결을 얻어야”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유림에 대해서는”을 “공유림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와”를 “경우와”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적합하도록 하게”를 “적합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을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

을 주거나 기부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의”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2.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를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적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목적으로 행정재산을”을 “목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입찰에 따라”를 “일반입찰로”로,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명세서

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처”를 “마친 후”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료의 요율”을 “사용료율”로 한다.

제24조 중 “이외의”를 “외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를 “제7조, 제7조의2”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이”를 “전라북도지사가”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대부료의 요율)”을 “(대부료율)”으로 하고, 제28조제1항 중 “대부료의 요율”을 “대부료율”로, “1,000분”을 “1천분”으로, “지형변경으로 인하여”를 “지형변경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저축되어”를 “불일치되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로, “1,000분”을 “1천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0명”을 “30명”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이외에”를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히”를 “매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체적인 증명서류”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기준에 명시”를 “기준이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원·부자재”를 “원자재·부자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국내원·부자재”를 “원자재·부자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원·부자재”를 “원자재·부자재”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7조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
 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
 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제33조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후단 중 “인해 중도에”를 “중도에”로 하며, “해지로 인한”을 “해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 이상”을 “5 이상”으로, “부분에 대하여”를 “부분을”로 한다.

제35조 제1항 중 “계약일로부터”를 “계약일부터”로, “그다음 해부터는”을 “다음 연도부터는”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를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여야”를 “기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대부료율

제37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작성·보관함으로써”를 “작성·보관하여”로 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라”를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로,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장하는 때”를 “연장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의2 제1항 중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8항”을 “제42조”로, “토지매입비”를 “인건

비, 토지매입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로, “이외의”를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이외의”를 각각 “외의”로, “1,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타당성 여부”를 “타당한지”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냉·난방시설”을 “냉난방시설”로 한다.

제48조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할”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신축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52조 단서 중 “허가를 요하지”를 “허가가 필요하지”로 한다.

제54조 중 “비치”를 “갖추어”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0조 중 “과실로 인하여”를 “과실로”로 하고,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1조 중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을 “공용임차주택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부과·징수하고자”를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 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납부하고자 ”를 “납부”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나목 중 “허위서류”를 “거짓서류”로 한다.

제65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7조 중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를 “이”로,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 은”으로 한다.

제6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리책임) ① (생략)</p> <p>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u>소관에 속하는</u>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u>지정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소관에</u> ----- ----- ----- -----</p> <p>③ ----- ----- <u>지정에</u> ----- ----- -----</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실·과·소·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u>매각하고자</u>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 <u>경우</u> ----- ----- ----- ----- ----- ----- -----</p> <p>② ----- ----- ----- <u>매각할</u> ----- -----</p>

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국·소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담당국장 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4. 공인중개사, 건축사 자격을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략)

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지 못할 때에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⑧ (생략)

⑨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⑩ 법 제16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원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

④ (현행과 같음)

⑤ -----

-----의결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⑨ -----경우에는 -----
--.

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신 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략)
-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2. (생략)
-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

운 경우

2. 개인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⑪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 1. ~ 5. (현행과 같음)
- 6. ----밖에 -----

② -----

-----.

- 1. ----제7조제3항 -----

- 2. (현행과 같음)
- 3. 기준가격 3천만원 -----

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에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8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 7.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4. -----

가. -----

----- 기준
가격 3천만원 -----

나. -----

기준가격 3천만원 -----

제8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사
용 -----

5.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경우에는 -----

-----.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

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 -----
-----.

② -----
-----경우와
-----경우에는 -----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

-----적합하도록
-----.

②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생략)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생략)

<신설>

① -----

경우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무상사용기간) -----

-----.
----- 받은 -----
-----.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 -----

-----.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사용·수익허가하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는 경우

2.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수익허가) -----

-----분명하게 적어야 --.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경우에는 -----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

-----.

② -----

-----목적으로

-----.

③ -----

-----경우에는 -----

-----.

④ -----

-----드는 -----

⑤ 일반입찰로 -----
-----제27조제

5.·6.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3. 주거용건물(「건축법」에

5.·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율) ① -----
-----대부료율 -----

-----1천분 -----

-----지형변경으로 -----

②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

1. -----불일치되어 -----

2. (현행과 같음)

③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

1.·2. (현행과 같음)

3. -----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로 한정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 부하는 경우(다만,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5. (생 략)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 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 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 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 는 경우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 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 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원석 세제곱미터 당 그 해의 시가를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 로 한다.

②·③ (생 략)

-----제7조제1
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
계·의료급여 -----
-----1천분 -----

4. (현행과 같음)

④ -----대 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

1. ~ 5. (현행과 같음)

6. -----30명 -----
-----30퍼센트 -----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1천분 -----

②·③ (현행과 같음)

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매우-----

-----.

-----구체적인 증빙서류-----

-----붙여야-----.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
-----제13조제9항-----

-----.

1. -----

-----.

가. -----
-----기준이-----
규정-----

나.·다. (생략)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 사.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나. (생략)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 바.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나. (생략)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원자재·부
 자재 -----

마. ~ 사.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원자
 재·부자재 -----

 -

라. ~ 바. (현행과 같음)
 3.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원자
 재·부자재 -----

업

라. ~ 바. (생략)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 및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27조제1호 및 제2호 ---

4.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지한 경우에는
는-----

-----중도에

-----해지에 따른---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대부료 등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이상 -----
부분을 -----
-----.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계약일부터 ---

-----다음 연도부터는 ---

날부터 -----.

② (현행과 같음)

③ -----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

경우에는 -----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록하여야 -----.

1. ~ 5. (생략)

6. 대부요율

7. ~ 10. (생략)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

1. ~ 5. (현행과 같음)

6. 대부료율

7. ~ 10. (현행과 같음)

제37조(대부계약서) -----
-----경우에는 -----
-----작성 -----
-----성·보관하여 -----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남은 금액 -----

-----.

- 1. -----

-----매각하는 경우
- 2. -----
-----매각하는 경우
- 3. -----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
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생략)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
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을 2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잔
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
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
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
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
차금은 1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
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
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

3. -----

----인정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④ -----

-----경우에는 -----

남은 금액 -----
-----.

⑤ -----

-----남은 금액 -----

-----.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
부) ① -----

-----남은 금액 -----
-----.

② -----

이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
 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
 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
 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
 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단
 서 삭제 2014.4.2.>

6. (생략)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 청사 신
 축 시 위치·규모 재원 확보 등
 을 참작하여 청사별청사신축계
 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
 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영

5. -----외의 -----

 -----1천제곱미
터 -----

 -----외의 -----

6. (현행과 같음)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타당한지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제95조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 6.·7. (생략)
- ②·③ (생략)

제48조(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건축 조례」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 1. ~ 3. (생략)

제52조(사용허가) 관사는 시장의

-----.

- 1. ~ 4. (현행과 같음)
- 5. 냉난방시설 -----
--
- 6.·7.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할 -----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신축할 경우에는 -----

-----.

② -----

경우에는 -----
-----.

제51조(관사의 구분) --- 다음 각 호와 -----

- 1. ~ 3. (현행과 같음)

제52조(사용허가) -----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생략)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

-----, -----
-----허가가 필요
하지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갖추어 -----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경우에는 --

--

1. -----
경우
2. ----- 경
우
3. (현행과 같음)
4. -----

----- 경우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

경우에는 -----

-.

② -----

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
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
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
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
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
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
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
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
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
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
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
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
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
여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경우에는 -----

-----.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변상조치) -----

과실로 -----

-----경
우에는-----.

제61조(준용) -----공용임차주
택은 -----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
-----부과 ·
징수 -----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의 징수를 미룰 경우에는 변상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략)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생략)

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납부-----

-----.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1천만원-----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거짓서류-----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합필의 신청) -----

---경우에는 -----

-----.

제67조(준용) 이 -----

---사항은 -----

-----.

제68조(시행규칙) -----시행
에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224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연금 및”을 “출연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으로
인하여”를 “기금운용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
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5조 중 “안에서”를 “에서”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5명 이상 7명”을 “7명 이상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를 “시장이”로, “또는 위촉한다”를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사”를 “인사, 여성기업인, 여성단체 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임할”을 “한 번만 연임할”으로 하며, “전임자의”를 “전임자 임기의”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기하기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제될”을 “해제할”로 한다.

제10조의3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 제외한다”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융자조건)”을 “(이차보전 지원)”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창업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이내로”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3억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제6조제6호의 벤처기업과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 1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한다.

③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중 “이차보전에 관하여는”을 “이차보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통보일로부터”를 “통보일부터”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자금에 대하여는”을 “자금은”으로,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를

“따른 이자를 더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때에는”을 “해당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제13조 제3항제2호 중 “불가능한 때”를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아니할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판단될 때”를 “판단된 경우”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용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용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용자금의 전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용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16조 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회계년”을 “회계연”으로, “회계년도 6월말일”을 “회계연도 6월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사항을 때”를 “운영사항을”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기금은 종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로 한다.

1. ~ 4. (생략)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
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
는 공동사업

6.·7. (생략)

제8조(용자신청) ①용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1.·2. (생략)

3. 중소기업 증빙자료

② (생략)

제10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9
조에 따라 용자대상자를 선정 심
사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
로 구성하는 남원시 용자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
- 따라 -----

6.·7. (현행과 같음)

제8조(용자신청) ① ----- 받으려
는 -----

-----.

1.·2. (현행과 같음)

3. ----- 증명자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위원회) ① -----

----- 7명 이상
10명 -----

-----.

② -----

----- 시장이 -----
-----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 1. (생략)
- 2. 위촉직 : 남원시의회 의원,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10조의2(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0조의3(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않도록 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
----- 인사, 여성기업인, 여성단체 인사

③ -----
--한 번만 연임할 -----
-----전임자 임기의-----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 위하여 -----

② -----
---- 따라 -----

③ -----

----- 해제할 -----

제10조의3(수당 등) -----
--- 위원은 -----

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이 위원인 경우 제외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기금의 용자는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여 업
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포인트 낮게 정한다. 다만, 제6조
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우수
기업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5
퍼센트 포인트 낮게 정한다.

③ 제2항의 저리 융자금리와 소정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에 관하
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⑤ 용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
체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
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
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

-----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
-----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3억
원으로 -----.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
트 이내로 하며, 제6조제6호의 벤
처기업과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 1퍼센트를 추가로 지
원한다.

③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
에 따라 지급하되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 이차보전은 --

-----.

⑤ ----- 통보일부터 -----

-----.

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제12조(추가용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용자 할 수 있다.

제13조(용자금 상환) ① (생략)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③ 용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추가용자) -----

범위 -----
-----.

제13조(용자금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금은 -----
----- 따른 이자를 더한다.

③ -----
----- 해당한 경우에는 -----
-----.

1. 용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 불가능한 경우
3. ----- 따른 ----- 안
----- 니한 경우
4. -----
----- 판단된 경우

제15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
이 필요할 때에는 용자금의 관리
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1. ~ 3. (생략)

<신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영사항을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
----- 경우에는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용자금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용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용자금
의 전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3
년간 용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
-- 회계연도 -----

-----.

② ----- 따른 -----
----- 회계연 -----

----- 회계연도 6월 30일 --
-----.

③ ----- 운영사항
을 -----
-----.

제17조(시행규칙) ----- 시행에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225 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남원소방서에 시 긴급통제단을 두고 통제단장은 남원소방서장이 된다

제17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

2. 사전대비단계

○ 편성기준

실무반		
구성인원	총 6 + a 명	
상황 관리 총괄 (6명)	반 장(1)	담 당 관
	상황총괄관리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총괄관리(5)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재난 상황관리(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홍보전산과), 수색구조구급지원(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읍·면·동 1명씩 상황 근무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비상 I 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 6명 + a

통제관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6+a명	
상황관리 총괄	반장(1)	재난상황실장
	상황관리 총괄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총괄부서(5)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재난 상황 관리(2),
시설응급복구 등 12개 협업기능(a)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홍보전산과), 수색구조구급지원(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읍·면·동 1명씩 상황 근무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효 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2. 실무반 편성 : $8+\alpha+\beta$

통제관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8+\alpha+\beta$ 명	
상황관리 총괄 (8명)	반장(1)	담당관
	상황관리 총괄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총괄부서(6)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상황보고서 작성(1) - 재난 상황 관리, 상황 분석 평가(2),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경찰서), 수색구조구급지원(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β)	- 육군제7733부대3대대, 남원기상대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KT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등	

○ 근무방법

- 1). 상황 관리 총괄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읍·면·동 2명씩 상황 근무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발생 시
- 나. 태풍 :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대규모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 8+α+β

통제관 (재난관련국소실장)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관련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8+α+β명	
상황관리 총괄(8)	반장(1)	담당관
	상황관리 총괄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총괄부서(6)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상황보고서 작성(1) - 재난 상황 관리, 상황 분석 평가(2),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경찰서), 수색구조구급지원(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제7733부대3대대, 남원기상대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KT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등	

○ 근무방법

- 1). 상황 관리 총괄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소관부서 1/2명씩 비상 근무, 읍·면·동 1/2명씩 비상 근무

2.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재대본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안전재난과
		1. 영상회의 준비·운영 2. 주요인사 주재회의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자료 작성	주관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3. TV 방송 모니터링 4.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조사	안전재난과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재대본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재대본회의 개최 2.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안전재난과
		1.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2.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7.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8.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주관부서
	행정지원	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3.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총무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홍보전산과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시설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시설별 해당실·과 건설과 등
에너지 기능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경제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재난과 등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2.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육상교통·운수분야 긴급수송 지원 4. 내륙에서의 유도선 운항 통제실시(안전재난과)	교통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 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 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환경과
자원봉사관리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총무과 건축과
재난수습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홍보전산과
수색·구조·구급지원	1. 재난지역 수색·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소방서 수도사업소
사회질서유지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경찰서 건설과 교통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8명+a+β

통제관 (재난부서 국·소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8+a+β명	
상황 관리 총괄 (8)	반장(1)	담당관
	상황 관리 총괄반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관리 총괄(6)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상황보고서 작성(1) - 재난상황관리, 상황분석 평가(2),
	행정지원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 직원(1)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경찰서), 수색구조 구급지원(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육군제7733부대 제3대대, 남원기상대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KT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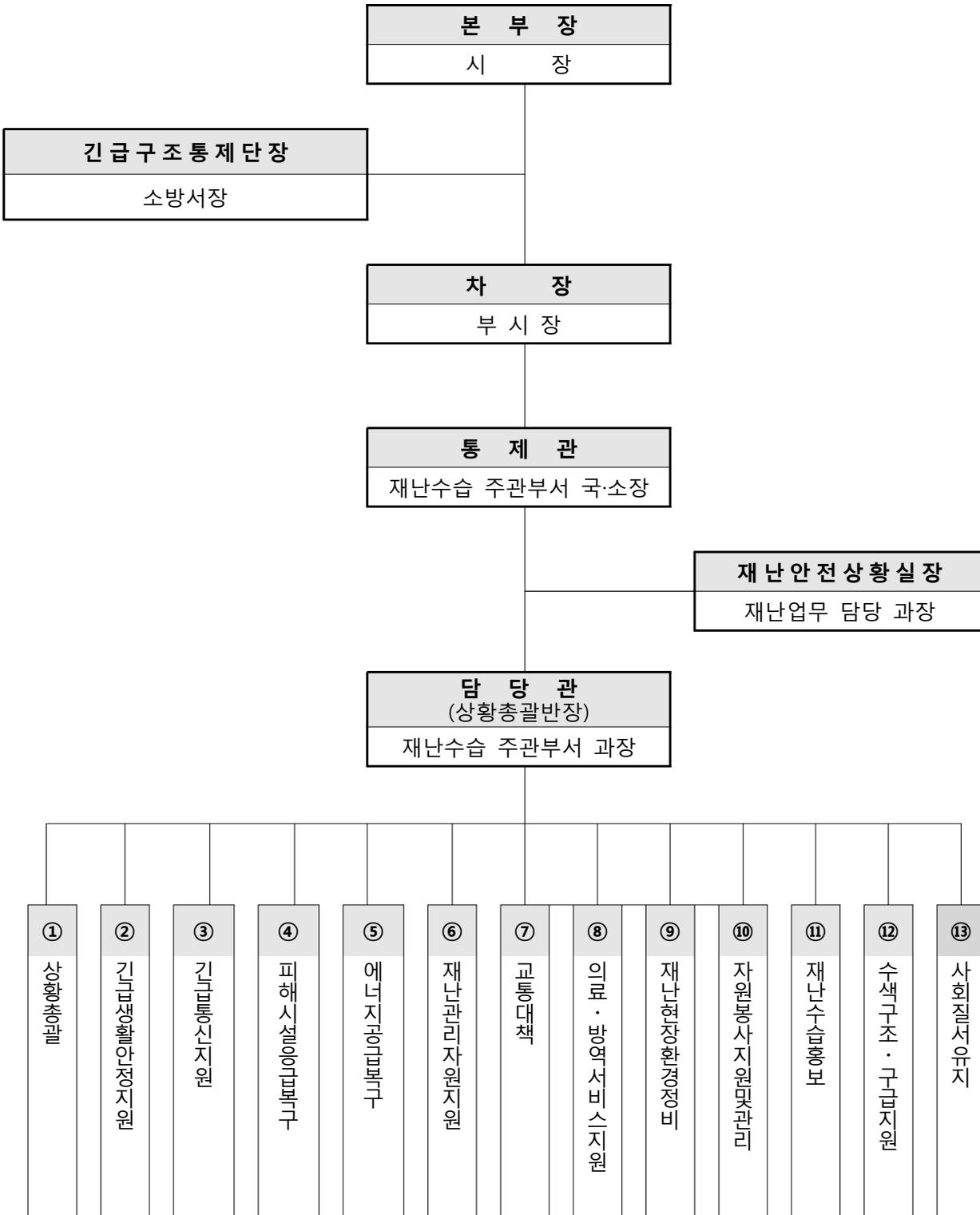
※ 근무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총괄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3.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7.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11.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12. 수색·구조·구급 지원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13.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 비고 : 준비단계 및 자연재난 비상단계 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함.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226 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2조 제4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을 “통합지원본부 설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지휘소 내에”를 “통합지원본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하여는 남원시 긴급 구조통제단장(이하 “시 통제단장”이라 한다)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를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으로, “도 대책본부”를 “전라북도 대책본부”로,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외에”를 “외에”로 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서는”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를 “없으면”로 한다.

제12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서는”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없는 한,”를 “없으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의 위치)”를 “(통합지원본부의 위치)”로 하고, 제14조

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6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없는 한,”를 “없으면”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응급의료 활동 지원)”을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현장응급의료소장”을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으로, “통합지휘소의 장에게”를 “시 통제단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을 “통제단장은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본부장은”을 “본부장 및 시 통제단장”으로, “등으로 인해”를 “등으로”로,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을 “현장지휘통신”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통제단장”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철수)”를 “(통합지원본부 철수)”로 하고, 제23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통합지휘가”를 “통합지원이”으로, “경우, 통합지휘소”를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응급의료 활동”을 “현장응급의료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u>통합지휘소</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u>현장지휘관</u>"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u>통합대응</u>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재난현장 통합지휘소</u>(이하 "<u>통합지휘소</u>"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p> <p>4. "<u>현장책임자</u>"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u>자</u>를 말한다.</p> <p>5. (생략)</p>	<p><u>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u>통합지원본부</u> ----- -----.</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 ----- ----- ----- ----- <u>사람</u> -----.</p> <p>5. (현행과 같음)</p>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 7. (생략)

③ 시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시 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시 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

-----.

1. ~ 7. (현행과 같음)

③ -----

-----.

④ ----- 따
른 -----

-----.

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하여는 남원시 긴급 구조 통제단장(이하 "시 통제단장"이라 한다)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
----- 통합지원본부 -----

----- 통합지원본부 -----

으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업무담당국장
-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

----- 없으면 -----

-.
<삭 제>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
-----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

----- 전라북도 대책본부 -----
-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

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 본부장으로 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원본부 -----.

<삭 제>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

----- 외에 -----

----- 재난관리 책임기관 -----
-----.

② -----

----- 없으면 -----

-----.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
 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
 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
 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
 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
 난관리 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
 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
 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없으
면 -----

 -----.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 통합지원본부
 -----.
 ② 통합지원본부 -----
 ----- 통합지원본부 ---

 -----.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
 보) ① -----

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 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 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

-----통합지원본부-----
-----.

② 통합지원본부 -----

-----.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 -----

-----.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없으면-----
----- 하여야 -----
-----.

제18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

----- 현장응급의료소의 소

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

장 -----

시 통제단장에게 -----
-----.

② ----- 통제단장은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
-----.

③ -----
----- 없으면 -----

-----.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 통합지원본부 -----

-----.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시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생략)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

----- 없으면 -----
-----.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 본부장 및 시 통제단장은 ---
- 등으로 -----
----- 현장지휘통신

-----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
--- 없으면 -----
----- 하
여야 -----.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원본부 -----

-----.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

회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 1. ~ 6. (생략)
-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 8. ~ 10. (생략)

지원본부 -----
---- 통합지원이 -----
--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 ----
-----.

제24조(권한의 위임) -----

-----통합지원본부-----
-----.

- 1. ~ 6. (현행과 같음)
- 7. ----- 현장응급 의료소 -----
- 8. ~ 10.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227 호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있으며, 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사용허가)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u>범위안에서</u>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u>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u></p> <p>② ~ ④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7조(사용허가) ① ----- -----<u>범위에서</u>----- ----- -----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u></p> <p>⑥ <u>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u></p>

남원시 남원시 재정현안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31일

남원시 훈령 제 354 호

남원시 재정현안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에서 응모하는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공모 사업에 대하여 정책 방향의 연계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남원시 재정현안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중앙부처 또는 전라북도에서 사업내용을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남원시 재정현안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각 부서에서 응모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여부
2. 각 부서에서 응모하는 공모사업의 규모, 사업비 등의 적정성
3. 그 밖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는 각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신청 마감 7일 전까지 사업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포함한 회의개최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공모사업신청 마감 3일 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7조(자체예산 부담 금지)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마치지 않고 선정된 공모사업은 남원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자료요구) 위원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에 따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심의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31일

남원시 훈령 제 355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심의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심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운영을 하기”를 “운영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 용자신청을 하고자 하는”을 “따라 용자신청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동 기금”을 “같은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연도”을 “해당 연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한 총 득점이 60점”을 “따른 총 득점이 50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체로 환수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가 점

구	분	배점	특점	구	분	배점	특점
합		20					
o	외국인 투자기업	4		o	신청금액		
o	최근3년 이내 장관, 도지사 표창, 기술혁신상 수상	4			5천만원 미만	4	
o	여성기업인	4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	
o	중진공, 정통부 추천업체	4			1억원 이상-1억5천 미만	2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1	

6. 종합평가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조사평가자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직 성명 (인)

〈증명서류〉

- o 유망중소 : 정부투자기관, 은행발굴지정증서
- o 수출업체 : 수출면장 및 은행 등의 실적증명
- o 포상업체 : 훈·포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중소기업청장)
- o 성장성, 생산성,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자산규모, 부채 : 재무제표

$$\text{※매출채권회전율} = \text{매출액} \div [(\text{전기매출채권} + \text{당기매출채권}) \times 1/2]$$
- o 공장등록 및 소기업 : 공장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 o 종업원수 :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
- o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등록 획득 : 인증서
- o 품질인증획득 : 인증서(상: ISO품질인증시스템, 100PPM, GQ,NT,EM,CE,K마크 기술인증)
- o 중: KS표시허가, Q마크, 우수디자인마크), (하:무획득)
- o 기술개발참여 :확인서(상:기술혁신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유망선진기술및 품질경영)
(중:산학컨소시엄기술개발, 품질분임조등록), (하:무실적)
- o 가점 : 확인서(신규신청기업 제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u>의하여</u>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대상자 선정 심의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u>운영을</u>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용자대상자 제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u>의거 용자신청을 하고자 하는</u> 경우 제한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u>동</u> 기금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업체 단, 상환기간 중에 공장 확장 및 신규시설을 투자한 기업은 용자한도액 내에 추가용자 가능 4. <u>당해연도</u> 용자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5. (생략) 6. 별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평가표에 <u>의한 총 득점이 6</u> 	<p>제1조(목적) ----- ----- ----- <u>따라</u> ----- ----- ----- <u>운영을</u> ----- -----.</p> <p>제3조(용자대상자 제한) ----- ----- ----- <u>따라 용자신청을</u> ----- ----- 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같은</u> 기금 ----- ----- ----- 4. <u>해당 연도</u> ----- ----- ----- 5. (현행과 같음) 6. ----- ----- <u>따른 총 득점이 50</u>

0점 미만인 업체

7. (생략)

<신설>

점 -----

7. (현행과 같음)

8.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체로 환수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남원시 고시 제 2015 - 1569호

2016년도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남 원 시 장

- 다 음 -

1. 2016년도 건물신축가액기준액 : 국세청 기준시가
2.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따로붙임
(세부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16년도에 적용할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보고드립니다

I 기본개요

□ 시가표준액 개요

- 취득세 등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인위적 평가액)
 -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장이 매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지수, 경과연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하여 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3">각종지수</td></tr> <tr><td>구조</td><td>용도</td><td>위치</td></tr> </table>	각종지수			구조	용도	위치	×	경과연수 잔가율	×	가감산 특례
각종지수														
구조	용도	위치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산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	----------	------	----------	-------------

※ 토지 및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사용

□ 시가표준액의 조정

〈 '16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방향 〉

- ▶ (건축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각종지수 등을 조정하되, 국민 세부담을 고려하여 결정
- ▶ (기타물건) 부동산과의 조세형평성은 제고하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연차적으로 현실화
- ➔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마련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 행정 구현

1 건축물

- '16년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국세청과 협의 결정)
 - 건축물 신축단가 변동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납세자 세부담 등 고려
 - * '15년 물가상승률 : 0.7%, '15년 경제성장률 2.7% (한국은행 10월 예측치)
- 세부 구조·용도별 현실화율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각종 지수 조정을 통해 개별 물건별 균형성 확보
 - '15.상반기(1~6월) 취득세 신고자료(약 22만건)와 시가표준액 비교결과 건축물 현실화율은 약 62.5%*(추정)로 다른 부동산 현실화율**과 유사
 - * 전국 62.5%, 서울 54.9% ** '15년 기준 토지 63.3%, 단독주택 61.9%, 공동주택 69.0%
 - 개별건축물에 따른 시가와 격차*해소를 위한 각종 지수 조정
 - * 취득가격 대비 시가표준액 60%미만 45.7%, 100%초과 4.7% 등

2 기타물건

- 물건간 현실화율 차이로 인한 조세부담 불형평 해소
 - 시가조사 결과를 통해 과세 정확성 도모
 - 영업용 및 이륜차가 생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서민 과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내용연수 연장(안) 보류

II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주요 내용 >

-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예정) : 65만원/㎡ → 66만원/㎡ (1.6% ↑)
 - 국세청장이 우리 부 협의하여 고시 예정('16. 1. 1.)
- ▶ 각종 지수(구조, 용도 등) 조정 및 가감산 특례 조정 등
 - 신축비를 반영한 구조지수 조정, 용도지수 조정, 가감산 특례 조정 등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안)

- (의의) 매년 1월 1일 국세청장이 건설비, 자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기준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변동 현황
 - '13年 62만원 → '14年 64만원(3.2% ↑) → '15年 65만원(1.6% ↑)

(단위 : 원, %)

연도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A)*	건물신축가격 기준액(B)	상승률	과표 현실화율 (B/A)
2011	874,000	580,000	7.4	66.3
2012	917,000	610,000	5.2	66.5
2013	928,000	620,000	1.6	66.8
2014	957,000	640,000	3.2	66.9
2015	920,000	650,000	1.6	70.7
2016	954,000*	-	-	-

* 서울소재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고층형 기준

○ 국세청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협의('15.11월중)

- 국세청(안) 66만원/m² 제시('15년 65만원/m² 대비 1.6% ↑)
- 건물 신축단가 변동과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제시(안)과 동일하게 66만원/m²으로 우리부 의견제시

(단위: 억원)

2015년도 재산세액 (65만원/m ²)	2016 재산세(일반 건축물) 추계액							
	65만원/m ² (동결)		66만원/m ²		67만원/m ²		68만원/m ²	
	세액	증감률 (증감액)	세액	증감률 (증감액)	세액	증감률 (증감액)	세액	증감률 (증감액)
9,319	9,142	△1.9% (△177)	9,285	△0.4% (△34)	9,428	1.2% (↑110)	9,715	4.3% (↑396)

※ 경과년수별 상각률 2%, 신축효과 4.6% 및 멸실 등 4.5%를 적용하고, 다른 지수는 동일하다고 전제하여 분석

2) 각종 지수 조정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 〉

- ▶ '13년 연구용역*에 따른 지수 연차별 개선안에 따라 조정하되,
*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감정원
- ▶ 시가변화와 국민 세부담을 고려하여 일부지수 가감조정
 - 조정된 지수에 대하여 추후 현실화율 분석 등을 통해 연차별 계획 재검토

구조지수

1) 지수조정

- 연차별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건축물 구조별 건축비 및 지수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수 추가 조정
 - 통나무조 127 → 130, 목구조 107 → 110, 연와조 96 → 100 등

<구조지수 세부내용>

현행			개정		
구 조 번 호	구 조	지 수	구 조 번 호	구 조	지 수
1	통나무조	127	1	통나무조	<u>130</u>
2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20	2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20
3	목구조	107	3	목구조	<u>110</u>
4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스틸하우스조, 철골조	100	4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스틸하우스조, 철골조, <u>연와조</u>	<u>100</u>
5	연와조	96	<u>5</u>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보강블록조, <u>ALC조, 시멘트벽돌조</u>	<u>90</u>
6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보강블록조	90	<u>6</u>	<u>목조</u>	<u>75</u>
7	ALC조	87	<u>7</u>	시멘트블록조, <u>와이어패널조</u>	<u>60</u>
8	시멘트벽돌조	86	<u>8</u>	경량철골조, <u>조립식패널조, FRP 패널조</u>	<u>55</u>
9	목조	70	<u>9</u>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40
10	시멘트블록조	60	<u>10</u>	컨테이너건물	<u>35</u>
11	경량철골조, 와이어패널조	55	<u>11</u>	철파이프조	<u>22</u>
12	조립식패널조, FRP 패널조	50			
13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40			
14	컨테이너건물	30			
15	철파이프조	20			

2) 용어정의

○ 목구조에 한옥구조 내용 포함

- 한옥은 원가측면에서 저렴한 목조(지수 70)와는 큰 차이가 있어, 고가인 점을 고려하여 목구조(지수 110)지수에 포함

번호	현행	개선안
3) 목 구조	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상 한옥구조(목구조 및 일반(한식)목구조)를 포함하며 ,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9) 목조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구조를 제외한다.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구조(건축법상 한옥구조 제외)를 제외한다.

3) 적용요령 정비

○ 벽체의 종류 및 마감공사 유무에 따른 지수 적용요령

- 주된 구조가 철골조이고 벽체가 조립식 패널인 건물유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지수 75를 적용할 때 평균 현실화율이 77%로 나타나 상향 조정이 타당하며, 조립식패널이 칼라강판에 비하여 가격이 월등히 높음*에 따라 칼라강판으로 지어진 경우 조립식패널로 지어진 경우의 지수보다 보다 높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구조지수를 조립식패널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멘트블럭과 내부 마감공사를 한 경우도 구조지수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적용요령	현행	개선안
2)	-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하고, 시멘트블럭인 경우에는 지수 70을 적용한다. 단,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된 경우는 지수 83을 적용한다.	-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 또는 칼라 강판 인 경우에는 지수 75 를 적용하고, 시멘트블럭인 경우에는 지수 80 을 적용한다. 단,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된 경우는 지수 90 을 적용한다.

* 칼라강판 단가(㎡당 원) : 최고가 20,667원/ 최저가 3,884원

* 샌드위치패널 단가(㎡당 원) : 최고가 66,200원/ 최저가 19,500원

용도지수

1) 지수조정

○ 각 용도별 지수조정

-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실화율 63.1%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
- '사무용 오피스텔'은 지역자원시설세 3배 증가를 감안하여 하향
- '13년 연차계획에 따라 원자력 발전시설 지수 상향 조정
- 불합리한 근린생활시설의 재산세 다수 민원을 감안하여 하향

용도 번호	용도	대상건물	지수	
			2015	2016
1	주거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118	<u>125</u>
2	주거시설	아파트	107	<u>110</u>
5	숙박시설	관광호텔(특1·2등급)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2	<u>145</u>
10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100	<u>105</u>
	숙박시설	여인숙	100	100
12	판매시설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15	<u>110</u>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85	<u>90</u>
19	문화및 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85	<u>90</u>
26	업무시설	사무용 오피스텔	113	<u>110</u>
29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17	<u>115</u>
30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17	<u>115</u>
36	근린생활시설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인미원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고시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20	<u>118</u>

37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65	<u>70</u>
39	발전시설	원자력발전시설 [원자로터반보조핵(연료)폐기물 저장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250	<u>300</u>
45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차장	76	<u>74</u>
신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	<u>100</u>

2) 용어정의

○ (용도번호 41, 42) 전업농어가 창고를 전업농어가 주택창고로 변경

- 농수산물 보관창고인 건축물의 경우에도 전업농어가 창고라고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창고' 및 '전업농어가 창고'에 대한 적용요령을 명확히 구분

* 전업농어가창고는 전업농어가 주택의 부속건물이나 인접한 경우만 인정, 농수산물보관창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창고임

○ (용도번호 47) 동식물 관련시설

- 도축장, 도계장은 대부분 축협이나 대기업에서 대규모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가공시설에 가까워 지수 30을 적용하는 것은 지수가 너무 낮고 불합리하여 지수 80으로 상향 조정

가감산특례

○ 지하1층 상가부분 감산율 차등적용 개선

- 11층 이상 건물의 지하 1층의 임대료가 10층 이하 건물 임대료의 144% 수준으로 건물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

구분	현행	개선안	개정 사유
5층 미만 건물	20%	20%	○ 건물 층수에 따른 지하 1층 상가의 가치 차이를 반영 (10층 이하는 현행 20% 유지 11층 이상은 15%로 감산율 하향 조정)
5 ~ 10층 건물		20%	
11 ~ 20층 건물		15%	
21 ~ 30층 건물		15%	
30층 초과 건물		15%	

○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건축물의 감산율 개선

-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이상 건물중 4층은 감산율 적용(5/100)하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이하 건물중 4층은 감산율 미적용
- 과세 불형평에 따라 5층 이상 건물중 4층 감산율 적용 삭제

적용요령	현행	개선안
4)	○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상 상가건축물의 경우 4층은 5/100, 5층이상은 10/100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상 상가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 은 10/100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조정

- 현행기준 m²당 시가표준액이 너무 낮은 점을 고려하여 m²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을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정

* 현행기준의 대수선 건축물 m²당 시가표준액 108,563원
 법인 신고기준의 m²당 시가표준액 262,504원(현행대비 41.36%)

구분 구분 번호	m ²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 (%)		비 고
	대수선		
	현행	개선안	
1	20	<u>25</u>	○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m ²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2	20	<u>25</u>	
3	20	<u>25</u>	
4	20	<u>25</u>	
5	25	25	
6	25	25	
7	35	35	
8	35	35	
9	35	35	
10	30	30	
11	30	30	

Ⅲ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주요 내용 〉

-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총 68,794종에 대한 기준가격 조사
 - 현행 대비 대부분 소폭 상승 또는 포함세
- ▶ 평가모형 및 산출기준 정비
 - 영업용 승합·화물 및 이륜차, 자동세차시설 내용연수 조정
 - 방사능폐기물 저장시설 기준 신설 등

1. 기준가격 조사

- (조사대상)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시설물 등 총 68,794종*
 - 조사기관 : 한국감정원·한국물가협회 컨소시엄 / '15.4~11

* 전년 6,403종 대비 7%(4,491) 증가

구 분 물건별	종수(건)	구 분 물건별	종수(건)
계	68,794	시설물(부수시설물)	5,010(2,361)
차 량	47,823	입 목	98
기 계 장 비	11,632	어 업 권	280
선 박	143	회 원 권	3,221
항 공 기	226	지 하 자 원	361

- (가격변동) 현행 기준가격 대비 대부분 소폭 상승 또는 포함세이며 어업권, 시설물, 부수시설물의 변동률이 큼
 - (상승) 어업권 22.7%, 시설물 11.6%, 부수시설물 8.4% 등
 - * 어업권 양식품종 자율제 시행에 따라 신규수익 창출이 가능한 일부어장 가격 상승
 - (하락)* 회원권 △9.1%, 외산차량 △0.2% 등
 - * 지속적 경기침체 및 외산차량 관세 인하 등

2. 시가조사 결과 적용방안 검토

- (기본방향) 현실화율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과세불형평을 방지 하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차적 조정 실시
 - 현실화율이 90% 이상으로 시가가 충분히 반영된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은 조사결과를 그대로 적용
 - 현실화율이 80%미만인 물건에 대해서는 연차적 상향조정하되, 어선, 입목 등 농·어업 등 생계와 관련된 물건은 70%까지 조정
- 가격 및 현실화율 변동 현황

구분	'15년 현실화율*	조사가격 변동률	기준가격 변동률	'16년 현실화율** (예측)
차량	100%	(국산) 0.05% ↑ (외산) 0.22% ↓	(국산) 0.05% ↑ (외산) 0.22% ↓	100%
기계장비	100%	0.05% ↑	0.05% ↑	100%
시설물	78%	5.93% ↑	11.57% ↑	79%
항공기	79%	0.60% ↑	1.68% ↑	79%
선박	68%	0.84% ↑	5.42% ↑	72%
입목	61%	0.40% ↑	6.40% ↑	65%
회원권	101%	5.61% ↓	5.61% ↓	100%
어업권	62%	11.38% ↑	22.68% ↑	70%
지하자원	100%	0.40% ↑	0.40% ↑	100%
부수시설물	78%	3.62% ↑	8.45% ↑	79%

* '15년 현실화율 = 2015년 기준가격 / 2014년 조사가격

** '16년 현실화율(예측) = 2016년 기준가격(안) / 2015년 조사가격

3. 산출기준 등 정비

① 차량

□ 영업용 승합·화물차량 및 이륜차 내용연수 및 잔가율 조정

- (현황) 영업용 승합·화물차량 및 이륜차의 내용연수는 6년, 잔가율은 0.10
 - * 비영업용 승합·화물 자동차의 내용연수는 15년, 최종잔가율은 0.060
 -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짧은 내용연수로 인해 차종간 과세 형평성 저해
- (개선) 영업용 승합·화물차량 및 이륜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개선 검토
 - 다만, 영업용 승합·화물차량 및 이륜차의 대부분은 서민경제에 활용되고 있어 잔가율 개선시 과세부담 급증 및 서민경제 활성화 저해 우려로 중장기 검토

< 차량 내용연수 및 잔가율 기준 개선(안) >

구 분		내용연수 기준	잔가율(최종)	비 고
비 영업용	승용차_국산	15년	0.067	'12년 개선
	승용차_외산	15년	0.050	'11년 개선
	승합·화물	15년	0.060	'14년 개선
영업용	승용	4년	0.100	
	승합	6년 → 9년	0.100 → 0.060	
	화물	6년 → 12년	0.100 → 0.060	
이륜차		6년 → 10년	0.100 → 0.060	

** 2010~2014년 차량 취득세 평균 증가율은 6% 수준으로 내용연수 및 잔가율 개선 없이도 매년 1,900억원 수준 자연 증가분 예상

② 시설물 - 저장시설

☐ '방사능 폐기물(중·저준위)' 내용 신설

- (신설) 저장시설 중 저장조에 방사능 폐기물(중·저준위) 시설에 대한 용어정의 및 기준가격표 등 신설
 - 저장조 용어정의 개선

구 분	현 행	개선안
가. 용어정의	저장조란 곡물, 어류, 과일, 시멘트, 화학제품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저장조란 곡물, 어류, 과일, 시멘트, 화학제품, 방사성폐기물(중저준위)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저장조 기준가격표에 방사성폐기물 기준가격 추가

(단위 : 천원)

시 설 별	기 준 가 격	
철근콘크리트 탱크(방사성폐기물)	기 준 치	662,569,000
	1m ³ 당 증 감 시	-

③ 시설물 - 기타시설

☐ 자동세차시설 61종 추가 및 내용연수 조정

- (현황) 53종에 대한 기준가격 제시 및 내용연수 기준 15년 적용
- (개선) 61종을 추가하여 114종에 개한 기준가격 제시 및 내용연수 기준 10년으로 하향조정

〈 현황 - 자동세차시설 내용연수 및 잔가율 〉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잔존율	감가율
자동세차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 개선 - 자동세차시설 내용연수 및 잔가율 〉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잔존율	감가율
자동세차시설	10년	정액법	10%	0.09

4 시설물 - 레저시설

□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항목 삭제로 업무혼돈 방지

- (수영장) 수영장의 구조 구분 중 '철 및 기타금속조' 삭제

〈 현황 - 수영장 내용연수 및 감가율 〉

구 조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철근콘크리트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콘크리트조	30년	"	10%	0.03	
철 및 기타금속조	25년	"	10%	0.036	
기 타 조	40년	"	10%	0.0225	

〈 개선 - 수영장 내용연수 및 감가율 〉

구 조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철근콘크리트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콘크리트조	30년	"	10%	0.03	
기 타 조	40년	"	10%	0.0225	

○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의 구조 구분 중 'Latexite 바닥' 삭제

〈 개선 - 롤러스케이트장 기준가격표 〉

구 조	별	기준가격(천원)
인 조 석 물 깔 기 바 닥	500㎡기준	30,000
	1㎡증감시	28
시 멘 트 물 탈 바 닥	500㎡기준	28,000
	1㎡증감시	22
아 스 타 일 바 닥	500㎡기준	29,000
	1㎡증감시	24
폴 리 우 레 탄 바 닥	500㎡기준	37,400
	1㎡증감시	39
L a t e x i t e 바 닥	500㎡기준	41,250
	1㎡증감시	47
아 크 릴 바 닥	500㎡기준	31,000
	1㎡증감시	33
기 타 바 닥	500㎡기준	27,000
	1㎡증감시	19

〈 개선 - 롤러스케이트장 기준가격표 〉

구 조	별	기준가격(천원)
인 조 석 물 깔 기 바 닥	500㎡기준	32,800
	1㎡증감시	45
시 멘 트 물 탈 바 닥	500㎡기준	24,800
	1㎡증감시	34
아 스 타 일 바 닥	500㎡기준	26,400
	1㎡증감시	36
폴 리 우 레 탄 바 닥	500㎡기준	40,800
	1㎡증감시	56
아 크 린 바 닥	500㎡기준	28,000
	1㎡증감시	39
기 타 바 닥	500㎡기준	22,000
	1㎡증감시	31

수 시설물 - 급·배수시설

□ 맨홀의 규격 구분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

- (현황) 규격을 기준으로 2종으로 기준가격 제시
- (개선) 규격을 기준으로 4종으로 기준가격 제시

〈 현황 - 맨홀 기준가격표 〉

구 분	규 격	단 위	기준가격(천원)
맨 홀	1,000m/m×1,000m/m×1.2m	1개소	340
	1,200m/m×1,200m/m×1.5m	"	461

〈 개선 - 맨홀 기준가격표 〉

구 분	규 격	단 위	기준가격(천원)
맨 홀	800m/m×800m/m×1.0m	1개소	462
	1,000m/m×1,000m/m×1.2m	"	514
	1,200m/m×1,200m/m×1.5m	"	651
	1,500m/m×1,500m/m×2.0m	"	864

6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 '병원용 엘리베이터' 삭제 및 '침대용 엘리베이터' 신설

- (현황) 용어정의가 없으며, '중량'을 기준으로 2종으로 구분
- (개선)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인승'을 기준으로 3종으로 구분
 - 침대용 엘리베이터 용어정의 추가

구 분	용어정의 추가
마. 침대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

- '인승'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준가격표 세분화

〈 현황 - 병원용 엘리베이터 기준가격표 〉

형 별	교 류 형 (AC)			
	750kg		1,000kg	
증량별				
속도별	30m/분	60m/분	30m/분	60m/분
층 별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엘 리 베 이 터	21,582	25,256	24,080	30,512
1 층 증 감 시	1,008	1,163	1,008	1,163

〈 개선 - 침대용 엘리베이터 기준가격표 〉

형 별	교 류 형 (AC)					
	20인		24인		30인	
기준인원						
속도별	30m/분	60m/분	30m/분	60m/분	30m/분	60m/분
층 별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엘 리 베 이 터	41,720	42,886	47,552	48,952	56,186	58,520
1 층 증 감 시	1,936	1,936	2,052	2,052	2,286	2,286

남원시 공고 제 2015 - 1566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 ²)	이해관계인		
							지 번	면적 (m ²)	토지소유자
2015-26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487-16(대)	이승*	2015-건축과- 신축허가-72	9.18	0.56	3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487-4(대)	3	박중*

남원시 공고 제2015-15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자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1.

남 원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비고
변경	국도	국도17호선 (월평교차로)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산8-4도 ~ 임실군 오수면 용두리 110-1도	0.66	-	남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체계(월평교차로) 구조를 개선 하여 산업단지 물류 수송기능 향상 및 지역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구역 변경	

2. 사업명 : 국도17호선 월평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18. 12.

4.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5. 12. 31. ~ 2016. 1. 14.(14일간)
- 장 소 : 남원시청 도시과(3층)

5. 기타 관련서류는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68)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남원시 공고 제2015 - 1571호

남원 관광지(북남원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공고

남원 관광지(북남원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사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고시하였으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와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전라북도 제2015 - 331호. (2015.12.28.)]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남 원 시 장

I.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남원 관광지(북남원I.C) 연결도로 개설사업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 화정동 일원 5,910,000m²

시·군	읍·면	리·동	면적(m ²)	비고
합 계			5,910,000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금성리, 화정동	5,910,000	

3.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지정목적

- 낙후지역 관광개발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고용기회의 확대와 지역 경제를 회생시켜 지역주민 정주기반 조성
- 낙후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간, 지역 내, 도농 간 균형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2년 ~ 2015년
- 변경 : 2012년 ~ 2016년(1년 연장)

4.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명 칭 : 남원시청
 -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 대표자 : 남원시장

◦ 사업 시행방식 : 공영개발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8. 자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자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 방 비	민 간	
기반시설 사업	관광지(북남원I.C) 연결도로 개설사업	16,000	16,000	-	-	B=22m

◦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없음

(단위 : km, 백만

원)

사업별	연도별	총계(사업기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사업량	사업비					
관광지(북남원I.C) 연결도로 개설사업	L=2.4km B=22m	16,000	1,208	3,665	10,150	977		

9. 보상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10.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세부목록 : 붙임참조

11. 사업성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12.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관련도서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063-280-4277), 남원시 도시과 (063-620-6472)에서 열람가능

붙임 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구분	면·동	리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합 계					823,031.1	92,344.9			
1	대산면	운교리	1110-2	답	2804.0	163.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2	대산면	운교리	1109-1	답	1032.0	32.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대산면	운교리	1108-1	답	2234.0	47.0	대산면 금성리	진*인	
4	대산면	운교리	1107-1	답	1792.0	17.0	대산면 운교리	안*수	
5	대산면	운교리	216-2	도	30.0	30.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6	대산면	운교리	215-2	도	7.0	7.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7	대산면	운교리	214-2	도	86.0	86.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8	대산면	운교리	249-2	도	13.0	13.0	주생면 도산리	백*룡	
9	대산면	운교리	1099-2	답	1634.0	25.0	대산면 운교1길	박*영	
10	대산면	운교리	1098-2	답	993.0	13.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1	대산면	운교리	1097-2	답	756.0	10.0	성남시분당구금곡로	박*모	
12	대산면	운교리	1096-2	답	1392.0	1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3	대산면	운교리	1086-2	답	2629.0	77.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4	대산면	운교리	1085-6	답	1090.0	35.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5	대산면	운교리	1085-5	답	763.0	32.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6	대산면	운교리	1085-4	답	406.0	16.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7	대산면	운교리	1084-6	답	620.0	2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8	대산면	운교리	1084-5	답	766.0	16.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9	대산면	운교리	1087-2	답	3071.0	557.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20	대산면	운교리	1092	답	1509.0	1509.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21	대산면	운교리	1089-2	답	466.0	206.0	대산면 대산옥전길	이*순	
22	대산면	운교리	1090-2	답	1391.0	90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23	대산면	운교리	1093-2	답	1961.0	32.0	대산면 대산옥전길	박*모	
24	대산면	운교리	1093-3	답	1961.0	975.0	대산면 대산옥전길	박*모	
25	대산면	운교리	1091	답	1462.0	1462.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26	대산면	운교리	1094-2	답	1215.0	17.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27	대산면	운교리	1094-3	답	1215.0	301.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28	대산면	운교리	1095-1	도	22.0	22.0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해주*씨민공 파운교사중중	
29	대산면	운교리	1095-2	답	1061.0	15.0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해주*씨민공 파운교사중중	
30	대산면	운교리	1095-3	답	1061.0	72.0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해주*씨민공 파운교사중중	
31	대산면	운교리	911-135	잡	466.0	253.0	남원시 산성길	대한불교조계종**	
32	대산면	옥율리	766-127	답	1063.0	825.0	남원시 산성길	대한불교조계종**	
33	대산면	옥율리	766-125	잡	3149.0	145.0	남원시 산성길	대한불교조계종**	
34	대산면	옥율리	766-126	잡	3149.0	932.0	남원시 산성길	대한불교조계종**	
35	대산면	옥율리	766-129	답	236.0	23.0	대산면 운교1길	소*안	
36	대산면	옥율리	766-130	잡	3493.0	354.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7	대산면	옥율리	724	하천	294.0	294.0	대산면 금성리	모*중	
38	대산면	옥율리	726-3	전	707.0	4.0	대산면 감성1길	이*윤	
39	대산면	옥율리	726-1	하천	17.0	17.0	대산면 운교리 183	양*돌	
40	대산면	옥율리	825-10	답	2114.0	972.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41	대산면	옥율리	825-12	답	1590.0	82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42	대산면	옥율리	825-14	답	1337.0	645.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43	대산면	옥율리	825-15	답	2618.0	899.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44	대산면	옥율리	828-10	답	1512.0	5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45	대산면	옥율리	825-16	답	4009.0	364.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46	대산면	옥율리	828-11	답	1602.0	228.0	대산면 대산옥전길	이*순	
47	대산면	옥율리	828-12	답	2932.0	58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48	대산면	옥율리	828-13	답	2853.0	1079.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49	대산면	옥율리	828-14	답	2525.0	1251.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50	대산면	옥율리	828-16	답	2614.0	1615.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51	대산면	옥율리	829-4	답	2510.0	1076.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52	대산면	옥율리	829-5	답	1241.0	4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53	대산면	옥율리	산179-4	임	29653.0	99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54	대산면	운교리	산49-22	임	54375.0	2035.0	남원시 대산면 금강길	선*철	
55	대산면	운교리	산49-23	임	54375.0	1756.0	남원시 대산면 금강길	선*철	
56	대산면	운교리	산49-24	임	1898.0	16.0	남원시 대산면 금강길	선*철	
57	대산면	운교리	28-4	전	42341.0	4454.0	남원시 대산면 금강길	선*철	
58	대산면	운교리	1152-16	답	3909.0	151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59	대산면	운교리	1152-2	답	1886.0	1886.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60	대산면	운교리	20-2	도	18.0	18.0	안양사만안구명학로33번길	선*임	
61	대산면	운교리	1152-17	답	1724.0	1476.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62	대산면	운교리	1152-18	답	2862.0	54.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63	대산면	운교리	산51-3	임	10394.0	2949.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64	대산면	운교리	1100-1	답	1753.0	4.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65	대산면	금성리	산50	임	4443.0	4443.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66	대산면	금성리	산48-2	임	15194.0	864.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67	대산면	금성리	산51-1	임	11504.0	3020.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68	대산면	금성리	산49-3	임	1950.0	159.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69	대산면	금성리	산49-4	임	1950.0	253.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70	대산면	금성리	635-13	답	2800.1	1624.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71	대산면	금성리	635-19	답	3565.7	2391.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72	대산면	금성리	635-21	답	1822.0	1076.2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73	대산면	금성리	635-22	답	1892.0	928.4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74	대산면	금성리	635-15	답	594.2	308.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75	대산면	금성리	635-17	답	2415.7	1363.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76	대산면	금성리	635-23	답	2600.8	1205.4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77	대산면	금성리	635-24	답	2136.6	981.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78	대산면	금성리	635-25	답	3581.4	1432.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79	대산면	금성리	635-26	답	1378.4	346.5	남원시 대산면 금강길	선*철	
80	대산면	금성리	15,10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81	대산면	금성리	635-27	답	4404.6	477.9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82	대산면	금성리	637-1	답	3290.9	2071.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83	대산면	금성리	638-4	답	2696.4	1956.3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84	대산면	금성리	638-5	답	2902.8	1493.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85	대산면	금성리	639-11	답	3893.0	612.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86	대산면	금성리	639-12	답	3893.0	3.2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87	대산면	금성리	639-4	답	1079.4	1079.4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88	대산면	금성리	639-2	답	2744.6	2744.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89	대산면	금성리	639-10	답	1498.7	763.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90	대산면	금성리	639-13	답	432.8	29.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91	대산면	금성리	165-1	전	142.0	142.0	서울구로구고척로21나길	장*진	
92	대산면	금성리	165-2	도	83.0	83.0	대산면 금성리	장*택	
93	대산면	금성리	642-4	답	3865.0	54.4	대산면 금강안길	이*현	
94	대산면	금성리	643-9	답	3959.0	368.1	대산면 금강길	선*관	

95	대산면	금성리	643-8	답	3292.1	2911.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96	대산면	금성리	643-1	답	1506.5	1506.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97	대산면	금성리	645-10	답	2173.5	184.9	대산면 금강길	선*철	
98	대산면	금성리	646-12	답	2424.0	197.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99	대산면	금성리	646-11	답	1580.6	870.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00	대산면	금성리	645-11	답	2652.6	2104.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01	대산면	금성리	648-14	답	614.7	447.3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02	대산면	금성리	648-15	목	2975.6	519.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03	대산면	금성리	648-12	답	4683.8	2763.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04	대산면	금성리	648-11	답	4042.0	1991.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05	대산면	금성리	648-10	답	3837.8	105.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06	대산면	금성리	산2-8	임	8514.0	551.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07	대산면	금성리	산3-6	임	115,756.0	1,746.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08	대산면	금성리	산3-8	임	115,756.0	625.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09	화정동		374-18	전	8164.0	144.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10	대산면	옥율리	766-131	잡	3,139.0	161.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11	대산면	옥율리	825-17	답	988.0	254.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12	대산면	옥율리	825-18	답	654.0	11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13	대산면	옥율리	825-13	답	108.0	10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14	대산면	옥율리	825-11	답	154.0	154.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15	대산면	옥율리	825-19	답	692.0	46.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16	대산면	옥율리	825-20	답	3,645.0	37.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17	대산면	옥율리	828-15	답	73.0	73.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18	대산면	옥율리	828-17	답	459.0	459.0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한*옥	
119	대산면	옥율리	828-8	답	540.0	540.0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한*옥	
120	대산면	옥율리	828-18	답	1,374.0	27.0	대산면 옥율리	이*순	
121	대산면	옥율리	산179-6	임	26,785.0	53.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22	대산면	운교리	28-10	전	3,444.0	103.0	대산면 금강길	선*철	
123	대산면	운교리	28-11	전	34,443.0	36.0	대산면 금강길	선*철	
124	대산면	운교리	산49-25	임	48,651.0	143.0	대산면 금강길	선*철	
125	대산면	운교리	산49-26	임	1,882.0	24.0	대산면 금강길	선*철	
126	대산면	운교리	산51-4	임	7,445.0	95.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27	대산면	옥율리	766-128	답	17.0	17.0	남원시 산성길	대한불교조계종***	
128	대산면	운교리	911-36	답	82.0	82.0	남원시 산성길	대한불교조계종***	
129	대산면	운교리	1152-3	답	248.0	24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30	대산면	금성리	635-1	답	204.7	204.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31	대산면	금성리	635-20	답	230.0	230.0	대산면 금강안길	김*환	
132	대산면	금성리	635-2	답	113.5	113.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33	대산면	금성리	635-3	답	591.1	591.1	남원시 시청동로	강*권	
134	대산면	금성리	637-2	답	211.5	211.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35	대산면	금성리	638-1	답	740.0	740.0	대산면 금강안길	김*환	
136	대산면	금성리	643-2	답	380.3	380.3	부천시 월미구장말로	이*일	
137	대산면	금성리	643-10	답	3,591.2	128.2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38	대산면	금성리	643-11	답	4,050.4	25.5	대산면 금강길	선*철	
139	대산면	금성리	648-5	답	281.1	281.1	대산면 금강길	선*일	
140	대산면	금성리	산2-9	임	7,963.0	1,143.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141	대산면	금성리	산51-2	임	8,484.0	82.0	덕진구 덕진연못3길	김*수	
142	화정동		374-19	전	8,020.0	88.0	전주시 덕진구 매봉1길	허*옥	